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75 호 2019. 5. 16.(목)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09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 609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2019년 기준인력 범위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소득세 업무 등 국가시책 추진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 607명 ⇒ 615명(증 8) (안 제2조 관련)
 - 집행기관의 정원 : 593명 ⇒ 601명(증 8)
- 나.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관련)
 - 6급 이하 : 563명 ⇒ 571명(증 8)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07명”을 “615명”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3명”을 “60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15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613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7	22	3	3	1	8
6급 이하 계	571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 · 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u>607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93명</u></p> <p>2.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 기</th> <th>속 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60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05</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7</td> <td>22</td> <td>3</td> <td>3</td> <td>1</td> <td>8</td> <td></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u>563</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이하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 기	속 관	사업소	동	총 계	<u>607</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605</u>						-	3급	1	1						4급	4	3		1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u>563</u>						-	별정직 계	1						-	6급상이하계	1						-	<p>제2조(정원의 총수) ----- -----<u>615명</u>----- -----</p> <p>1. ----- : <u>601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 기</th> <th>속 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615</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13</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7</td> <td>22</td> <td>3</td> <td>3</td> <td>1</td> <td>8</td> <td></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u>571</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이하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 기	속 관	사업소	동	총 계	<u>615</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613</u>						-	3급	1	1						4급	4	3		1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u>571</u>						-	별정직 계	1						-	6급상이하계	1						-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 기	속 관	사업소	동																																																																																																																																																																										
총 계	<u>607</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605</u>						-																																																																																																																																																																										
3급	1	1																																																																																																																																																																															
4급	4	3		1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u>563</u>						-																																																																																																																																																																										
별정직 계	1						-																																																																																																																																																																										
6급상이하계	1						-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 기	속 관	사업소	동																																																																																																																																																																										
총 계	<u>615</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613</u>						-																																																																																																																																																																										
3급	1	1																																																																																																																																																																															
4급	4	3		1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u>571</u>						-																																																																																																																																																																										
별정직 계	1						-																																																																																																																																																																										
6급상이하계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정원 8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 산정
 - 6급 이하 : 6급 21호봉 기준(월3,778,900원)
 - 매년 기본급 인상분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	행정운영경비(8명)	223,855	691,702	712,453	733,826	755,84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A+B) (2019년 9월~12월분)	5급(A) : 증원 없음	6급 이하(B) : 8명 증 (2019년 9월~12월분)
총 계	671,556(223,855)	-	671,556(223,855)
○ 인건비	528,386(176,130)	-	528,386(176,130)
- 기본급	362,775(120,925)	-	362,775(120,925)
- 수 당	105,586(35,196)	-	105,586(35,196)
- 정액급식비	12,480(4,160)	-	12,480(4,160)
- 명절휴가비	36,278(12,093)	-	36,278(12,093)
- 연가보상비	11,267(3,756)	-	11,267(3,756)
○ 물건비	15,840(5,280)	-	15,840(5,28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직급보조비	15,840(5,280)	-	15,840(5,28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	-
○ 이전경비	127,330(42,445)	-	127,330(42,445)
- 성과상여	29,195(9,732)	-	29,195(9,732)
- 연금부담금	79,258(26,420)	-	79,258(26,420)
- 건강보험부담금	17,579(5,860)	-	17,579(5,860)
- 노인장기요양보험	1,298(433)	-	1,298(433)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계		223,855	691,702	712,453	733,826	755,840	3,117,676
구비	일반회계	223,855	691,702	712,453	733,826	755,840	3,117,676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